

동진버스 시내(마을)버스운송사업 운송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여객 간의 운송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여객운송과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② 이 약관은 관련 법규에 저촉될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준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할관청의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4조 (차량에 표시 및 부착) 사업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차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명,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차고지 등을 기재한 표지판
2. 비상시(사고 및 화재 발생) 하차문 개문방법
3. 운행계통도(노선안내도)

제 2 장 운 임

제5조 (운임의 지불) ① 여객은 승차 시 관할관청에 신고 수리된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성인) 1인당 동반하는 만 6세 미만의 어린이 1인까지는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하며, 만 6세 미만의 어린이 2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제외한 인원의 운임은 초등생 운임을 적용한다.

③ 만 6세 미만의 어린이 단독 승차 시는 초등생 요금을 적용한다.

제6조 (운임의 할인) 다음 각 호에 속하는 여객은 일반요금에 준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관할 관청의 운임신고 수리 시 변동될 수 있다.

1.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자

2. 초등생

3. 중·고생

4. 전국버스연합회와 국가보훈처 간의 계약이 유효한 경우, 국가유공자가 신분증을 제시하면 수송시설 이용에 대해 무임 또는 할인이 적용될 수 있다

5. 운임의 할인 시 필요한 경우 운전원은 여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환승 할인) 환승할인의 적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은 하차 직전 교통카드를 하차단말기에 접촉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때에는 추가운임이 부과될 수 있다.

2. 환승할인은 동일한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환승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3. 동일 노선의 환승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여객은 1개의 교통카드로 2인 이상이 승차 시 승무원에게 승차인원을 명확하

게 알린 후 운수종사자의 단말기 조작으로 요금을 징수한다. 이때 환승할인은 1인에게만 적용되며 나머지 승객은 적용되지 않는다.

5. 환승 할인은 유료탑승 후 60분 이내에 2회에 한하여 승차 가능하다.

제8조(운임의 환급)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운송을 중단할 경우에는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 단, 교통카드로 지불한 운임은 운영사의 카드시스템 자료 확인 후 지급한다.

제 3 장 운 송 책 임

제9조 (물품 등의 소지 제한) 버스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 된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시체
3.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 및 전용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4. 버스 내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5.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6. 별표 1(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규정)에 따른 일회용 용기(일명 “테이크아웃 컵”) 등에 담긴 반입금지 음식물 또는 불결, 악취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제10조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버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품을 함부로 차량 밖으로 버리는 행위
2. 운수종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동차의 기계 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운행 중에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4. 다른 여객에 대하여 기부 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5. 차량 내 흡연 (전자담배 포함) 및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6. 운행 중 버스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7. 정해진 승강장(정류장)이 아닌 지역에서 승하차를 요구하는 행위
8. 기타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9.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10. 차내에서 포장 또는 밀폐된 용기에 담긴 음식물을 개봉하거나,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다만, 수분 섭취를 목적으로 밀폐된 용기에 담긴 음료의 일시적 취식은 제외한다.)
11. 애완동물 등 동물을 방치하여 차내에서 돌아다니게 하는 행위

제11조 (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위반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제9조 각 호에 정한 물품 등을 가지고 타려는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하면 이동이 어려운 중증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4.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따른 의무 불이행자

5. 만취 또는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결한 복장을 한 자로서 다른 승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6. 제5조의 운임 징수에 불응한 자

제12조 (배상책임) ① 사업자는 운송 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자는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

- ② 운수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객의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여객의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사업자는 여객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부정승차의 부가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징수하며, 부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여객이 운임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경우
2. 여객이 운임을 현금 및 교통카드로 지불하면서 부족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3. 성인이 어린이, 청소년 교통카드로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무료 환승하는 경우
5. 여객이 초과 운임의 지불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카드 단말기에 선·후불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접촉)하는 경우 등

제14조 (면책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불의의 피해

2. 여객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여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
3. 운송 도중 여객이 차량을 무단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4.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여객의 현금 등 소지품이나 수화물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 피해
5. 약관 제9조 및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6. 약관 제11조 각 호에 따른 운송의 거절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7. 여객이 이 약관 및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제 4 장 안 전 수 송

제15조 (사고 시의 조치)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여객의 보호 및 편의 제공
2. 신속한 응급수단 기타 필요한 조치 강구
3. 유류품의 보관
4. 가족, 기타 연고자에의 신속한 통지

제 5 장 차 내 휴대품

제16조 (차내 휴대품) 사업자는 휴대품 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

제17조 (허용 중량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20

kg 이하이고, 포장이 양호한 물품으로 한다. 다만 접이식 자전거, 전동킥보드·휠 등은 출퇴근 시간 및 승객 만차 등 차내 여건에 따라 반입을 거절할 수 있다.

제18조 (휴대품의 보관책임) 휴대품은 승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해야 하며, 휴대품의 보관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 하는 한 사업자의 면책 사항으로 한다.

제19조 (휴대품의 내용 확인) 자동차의 운행 보안상이나 법령 기타 사유에 의하여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대품의 내용을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 3자의 입회하에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적용 법령의 범위)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제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이 약관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4. 7. .

[별표 1]

1. 반입금지 음식물

구분	내용
적용기준	가벼운 충격(의자 등에 부딪히거나,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셀 수 있는 음식물 또는 포장되어 있지 않은 음식물
적용대상	1) 일회용 용기(테이크 아웃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2) 일회용 용기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3) 여러 개의 일회용 용기를 운반하는 상자 등에 담긴 음식물 4)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2. 반입허용 음식물

구분	내용
적용기준	차내에서 취식할 목적이 아닌,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소지하고 타는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등
적용대상	1)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 2)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3)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4) 밀폐형 텀블러, 보온병 등에 담긴 음식물 5)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 (시장 등에서 구입, 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

3. 반입금지 및 허용의 예시

반입금지 음식물의 예시	반입허용 음식물의 예시
- 뚜껑이 없는 용기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 뚜껑이 없는 용기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 여러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한 음식물 -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소량의 식재료